

대전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나116317 판결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울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2. 1. 11.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1330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9. 체결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2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6. A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8. 12. 20.경 중소기업은행에 229,852,3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9. 주식회사 F에게 2회에 걸쳐 총 2,700,000,000원(= 2,270,000,000원 + 4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F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8. 7. 9. A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담보채권의 공동저당권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86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주식회사 F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총 2,509,000,000원(= 2,270,000,000원 + 239,000,0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2. 27. 2,47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1,515,156,690원 상당이 있었고, 채무로는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28,000,000원, ② 제3자에 대한 채무 1,081,113,491원 합계 1,309,113,491원(= 228,000,000원 + 1,081,113,491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의 무자력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식회사 F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2,509,000,000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2,47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결국 물상보증인인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는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509,000,000원에서 이 사건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2,4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9,000,000원(= 2,509,000,000원 - 2,470,000,000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의 재산 1,515,156,69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9,000,000원을 공제한 1,476,156,690원(= 1,515,156,690원 - 39,000,000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1,476,156,690원이었던 반면, A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309,113,491이었으므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

목록(1)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 []
[도로명주소] 경기도 가평군 []
일반목구조 경시지붕(일반목구조) 단층 단독주택
1층 176.22㎡

2. 근저당권의 표시

접수일자 : 2018년 7월 9일
접수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8682호
채권최고액 : 금 3,120,000,000원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
(천안지점)

- 이 상 -

목록(2)

피고 주식회사 []이 의정부지방법원 []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경기도 가평군 [], [] 건물 (도로명 : 경기도 가평군 []) '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동기소 2018. 7. 9. 접수 제16682호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 81,855,524원, 이상, 끝.

